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23일, 황정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7.) 상정, 축조심사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8.)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4. 12.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2. 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황정아의원)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연장(개정안 제35조)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1항, 제2항).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약 717만 가구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가입이 유지되고 있는 건은 2014년 약 2만건에서 2023년 약 9만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개정안을 통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할 때 등기 절차에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하는 인원이 확대되고, 소득 기준 빈곤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일몰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